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 나. 201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1) 1,627명 → 1,639명(+12명)
- 집행기관 : 1,599명 → 1,611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변동없음)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 3])

- 1) 정원 총계 : 1,627명 → 1,639명(+12명)
- 2) 일반직 계 : 1,588명 → 1,600명(+12명)
- 3) 6급이하 계 : 1,488명 → 1,500명(+12명)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2,700,186천원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7명”을 “1,6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99명”을 “1,61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39	1,639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00	1,600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9	29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500	1,500					
전문경력관 소계	10	1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u>1,627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39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99</u> <u>명</u>	1.----- <u>1,611</u> <u>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8.7.3., 2013.12.4.>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201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12명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1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12명을 증원할 경우 '16년 504,543천원을 포함하여 '20년까지 2,700,18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구분							
세입	국고보조금(a)	49,000	84,000	84,000	84,000	-	301,000
세출	시 비(b)	455,543	437,697	455,434	473,774	576,738	2,399,186
총 비용(a+b)		504,543	521,697	539,434	557,774	576,738	2,700,186

※ 2016년도 국고보조 추계 : 순증하는 사회복지직렬(4명) 공무원 인건비의 70%를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고로 보조함. '16년도는 6월이후 임용가능하므로 7개월간 국고보조금으로 추계하였음.
 ↳ 30,000천원×4명×70%×(7월/12월)=49,000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국 비	49,000	84,000	84,000	84,000	-	301,000
시 비	455,543	437,697	455,434	473,774	576,738	2,399,186
합 계	504,543	521,697	539,434	557,774	576,738	2,700,18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강유현(054-480-67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을 12명 증원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행정자치부, '15.12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주요업무추진 순증인력 12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16년도 순증분은 공무원 1인당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504,543천원으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7년부터 '20년까지는 201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순증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인건비는 2019년까지 1인당 30,000천원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소관 실 · 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조 석 희
	담 당	김 현 주
	담 당 자	강 유 현 (480-6773)